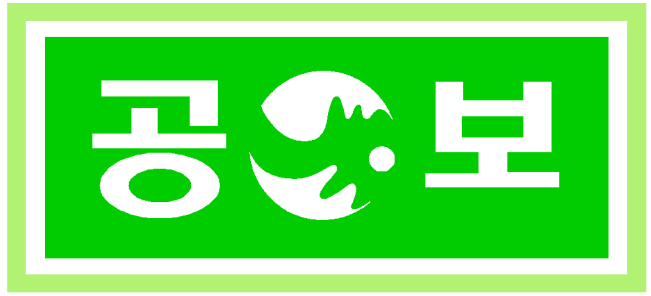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구 관	기 관 의 장



제 1146 호 2018. 11. 1. (목)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286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192호[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중로2-277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198호[도시계획시설(도로,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202호[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203호[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 12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구정소식→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9. 8.>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고시 제 2018-286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이에스종합건설그룹		
	대표자 (성 명)	이동기	주소	남구 남종로 74번길 9-1
소하천명		연암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52-6번지		
	면적	일시 : 37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일시 : 2018. 10. 29. ~ 2019. 6. 4.		
	목적 및 사유	공사차량 진출입로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192호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중로2-277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69호(2007.09.06.)호로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31호선, 중로2-277호선) 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중로2-277호선) 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중로2-277호선) 사업
2. 위 치: 신천동 104-5번지 일원
3. 사업개요

구 분	시설명(노선명)	규 모			비 고
		B(m)	L(m)	A(m ²)	
	합 계	-	-	5,371.9	
도 로	대로2-31호선	15	260	4,105.2	반쪽개설
	중로2-277호선	15	81	1,266.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 본부장 허정문
나. 주 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5. 사업기간: 2007. 09. 06. ~ 2019. 08. 31.
6.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052-241-79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1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591호선, 문화시설)사업
 - 나. 명 칭: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
3. 사업규모

구 분	시설명(노선명)	규 모	비고
도 로	소로2-591호선	B=7~8m, L=427m(150m)	
문화시설	소금포 역사관	A=351m ²	부지조성

※ ()은 금회 개설 구간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의 기간: 2018. 11. ~ 2019. 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면·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공보게재 익일로부터 14일 간
8. 열람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서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m)	면적 및 수량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북구 영포동	194-1	상가	목조	93.5㎡	최**	부산광역시 동래구	
2	"	"	지붕	슬레이트(석면)	119.3㎡	"	"	
3	"	"	상가	벽돌조	91.6㎡	"	"	
4	"	"	창고	조립식	5.4㎡	"	"	
5	"	"	상가	조립식	3.8㎡	"	"	
6	"	"	화장실	철근콘크리트	10.2㎡	"	"	
7	"	"	블럭담장	H=1.0m	9.0㎡	"	"	
8	"	"	계단	철근콘크리트	19.2㎡	"	"	
9	"	"	처마	천막	169.0㎡	"	"	
10	"	"	처마	파이프	461.6㎡	"	"	
11	"	"	처마	슬레이트(강판)	32.4㎡	"	"	
12	북구 영포동	192-7	블럭담장	H=0.8m	21.0㎡	김**	울산광역시 북구	
13	북구 영포동	193	블럭담장	H=0.8m	6.5㎡	전**	울산광역시 북구	
14	북구 영포동	175-11	주차부스	목조	11.6㎡			
15	"	"	지붕	슬레이트(강판)	11.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유자	비 고
1	북구 엄포동	191-2	도	155	19	**건설주식회사	
2	북구 엄포동	175-11	전	13	9	울산광역시 북구	
3	북구 엄포동	175-2	전	99	1	노**	
4	북구 엄포동	176-11	전	149	55	울산광역시 북구	
5	북구 엄포동	176-3	전	30	24	김** 외 1인	
6	북구 엄포동	191-3	도	391	331	**자동차주식회사	
7	북구 엄포동	192-2	답	1,095	24	명의인 없음	
8	북구 엄포동	171-4	도	109	28	박**	
9	북구 엄포동	193-1	대	225	1	박**	
10	북구 엄포동	192-11	도	332	146	울산광역시 북구	
11	북구 엄포동	171-5	도	63	44	김**	
12	북구 엄포동	193	답	20	20	천**	
13	북구 엄포동	192-7	답	168	168	김**	
14	북구 엄포동	195-2	답	400	35	이**	
15	북구 엄포동	968-5	도	2,079	184	국(국토교통부)	
16	북구 엄포동	194-1	대	1,041	357	최** 외 1인	
17	북구 엄포동	194-2	도	89	89	최** 외 1인	
18	북구 엄포동	169-2	도	36	14	김**	
19	북구 엄포동	196-5	도	46	45	울산광역시 북구	
20	북구 엄포동	196-4	도	49	6	울산광역시 북구	
21	북구 엄포동	196-1	도	146	2	울산광역시 북구	
합 계				6,735	1,602		
				21 필지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8-1202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복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개정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시행일을 2019년 1월1일부터로 함(안 부칙)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1202호

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북구청 기획공보실 / (☎)052-241-7112 Fax :025-241-7109, e-mail : asd78top@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8 - 1203호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장수관인	국 명칭 현행화 (총무국⇒ 행정지원국)	2018. 11. 1.		

2. 폐기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북구 총무국 민원지적과장수관인	국 명칭 현행화 (총무국⇒ 행정지원국)	2018. 11. 1.	